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현희 (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공직사회
뿐만 아니라 기업,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
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,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
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우·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
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
정한 상한액을 농수산 업계 배려 차원에서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개정
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
능하도록 함(법 제17조 관련 [별표 1] 제4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
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 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 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10만원으로 한다. (신 설)	[별표 1]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.